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대시대 http//www.motie.go.kr

2014년 6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입지총괄과 박영삼 과장(044-203-4430), 차세운 사무관(4431)
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재식 과장(5540), 규제개혁TF 배준형 팀장(5590)

산업부,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개선에 나서다

- 김재홍 1차관 주재 『제6차 규제 청문회』 개최 -
- 복합구역 도입 등 7개 개선과제 도출, 연내 마무리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5일(日) 오후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**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**하였음

○ **등록규제** 현황, 그간의 **민원사례** 및 기업 **애로조사**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**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**, 그 이행에 착수하기로 함

* 산업부 소관 산업입지분야 등록규제 45건 재검토
* '12년-14년간 산업부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 740건 분석
*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애로조사 실시 (4-5월, 산단공)

<제 6차 규제청문회 개요>

- **일시/장소** : 6.15(일) 14:00~16:00 / KOTRA 세미나실
- **참석** : (청문위원) 제1차관, 기획실장, 이종영 중앙대 교수, 김문겸 숭실대 교수,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, 김인중 강원발전연구원 본부장
 (산업입지 담당) 산업부 산업입지 담당 실장, 과장, 관련 민간전문가 등
- **주요내용** :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방향, 관련 규제신문고 건의사항

□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"**진입규제, 행위제한, 절차규제**"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,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

* 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' (이하 "**산집법**")상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

□ "**진입규제**" 분야는 **산업단지 내 업종·용도규제**에 초점을 두었으며, 특히 융합·창의 등 **산업의 新트렌드에 대응**하고 **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**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,

○ ①산업시설과 지원·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**'복합구역'**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, **근로자의 복지·편의시설 이용을 편리**하게 하고 산단 내 업종·기능간 융·복합을 촉진하는 한편,

* 現 규정은 산업·지원·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분리함에 따라, 사업장(산업시설구역)과 복지·편의시설(지원시설구역)간 이격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이 상당

○ **②지식산업 7종**의 산단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,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**산단 업종규제를 완화**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

*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을 13종→20종으로 확대 (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, 환경정화 및 복원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물품감정·계량 및 견본추출업 등 추가)

○ ③**문화·집회시설**의 **지식산업센터 입주**를 허용하고, ④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**지가차익 환수 의무**를 **합리적 수준으로 조정**하기로 하였음

□ "**행위제한**" 분야는 **산업단지 내 건축물규제** 및 **거래**(토지처분·임대 등) **제한**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,

○ ⑤현재 40%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**비제조업의 기준 건축면적률**을 **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**하기로 하였음

* 기준건축면적률 : 사업부지면적 대비, 사업 관련 건물(사업장 등) 연면적(각 층별 바닥면적 합계)의 비율

□ "**절차규제**" 분야는 **산단 입주기업 관리** 및 **공장설립** 관련 **행정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**하는 방안 논의에 주력한 결과,

○ ⑥**산단 내 임차기업**의 **이전 절차를 단축**하고 ⑦개별입지 내 **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**하기로 결정하였음

□ 한편, 논의 과정에서 산단 입주가 가능한 **"공장 부대시설" 범위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** 위주로 **확대**하는 방안, **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**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었던 바,

○ 상기 사항들은 그 **기대효과 및 부작용**에 대한 **면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**하기로 하였음

□ **규제완화의 결과**,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·근로여건 개선 및 유망 新산업 진입 확대를 통해 **노후 산단 재창조의 전기를 마련**할 것으로 기대되며, **산업입지 행정의 선진화**도 촉진할 전망

○ **개선과제**들과 관련된 **산집법** 및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등의 **법령 개정사항**은 **'14년말 완료**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,

○ 앞으로도 산단 입주기업·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**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**해 나갈 예정임

※ 산업입지 규제개선과제 요약 총괄표 (상세내용은 [참고2])

기본방향	세부과제	계획
업종·용도제한 등 산업단지 진입규제 완화	**①복합구역 도입** **②고부가 서비스업의 업종규제 완화** **③지식산업센터 내 문화·집회시설 허용** **④용도 변경시의 지가환수제도 합리화**	연내 법령개정
	※추가 검토과제 *공장부대시설 인정범위 확대(복리후생시설)*	타당성 검토중
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위제한 완화	**⑤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**	연내 법령개정
	※추가 검토과제 *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 허용*	타당성 검토중
절차규제 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행정 구현	**⑥산단 내 임차기업 이전절차 단축** **⑦개별입지 공장설립 제출서류 간소화**	연내 법령개정

□ 한편, 산업부는 6차 산업입지 분야 청문회를 끝으로 **『규제청문회』 일정을 마무리**짓기로 하였음

□ 그 동안 산업부는『규제청문회』,『규제개혁TF(팀장 : 제1차관)』운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**당초 목표대로 약 1,000개의 경제적 규제 중 15%를 연내 폐지할 규제목록으로 최종 확정**하였음

* '14년 全 부처 기존 등록규제 감축수준: 8.8%(국무조정실, 6.10)

** 인증(4.20일)을 시작으로 신재생, 산업입지 등 총 규제청문회 6회 개최

※ 분야별 등록규제 감축 주요 내용

▷ **(무역투자)** 전시사업자등록제도, 수출입 거래규정, 외투기업신고사항 정비,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사항 정비,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폐지 등

▷ **(산업전반)** 부품소재신뢰성·지능형로봇·환경경영·생산성경영 등 인증제도 정비, 산단관련 규제정비, 산업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폐지 등

▷ **(에너지자원)** 신재생 보급확산을 위한 불필요한 신고·자료제출의무 폐지, 신재생 인증제도 정비, 천연가스 수입계약 체결 통보의무 폐지 등

▷ **(국가표준)** 제품의 규격통일·단순화 명령을 시장요구에 따라 업계자율로 전환 등

○ 또한, 제출서류, 교육주기, 과태료·과징금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*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 **3년마다 해당 규제 유지 또는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**하기로 하였음

* 전체 경제적 규제 중 약 1/3에 대해 '재검토형 일몰'을 설정

○ 특히, **투자를 저해하는 규제**는 **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**해 나가기로 하였음

- 대표적 사례로는 **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** 시 **'중대한 사항' 외의 기타 사항은 모두 시·도지사로 위임**하는 등 종전 산업부 승인사항을 대폭 줄여 **관련비용 절감과 투자유치 확대**가 기대됨

*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수는 연평균('11～'13) 14건으로, 네거티브 변경시 연평균 9건으로 감소(40%↓) 전망

** (예)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 비용 등 약 175억원 절감 가능(이자율 3.5% 가정)

- **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가능한 시설**도 기존 열거방식에서 **'금지시설'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**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단지운영을 하여, **창의적 사업들의 단지 내 진입이 활성화 될 것**으로 기대됨

□ 산업부는 발굴된 감축 규제가 예정대로 폐지·개선될 수 있도록 **금년말까지 관련 입법조치**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

* 법률 23개, 시행령 이하 11개 등 산업부 소관 총 44개 법령 정비 필요

○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위 '숨은 규제'라고 불리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, 현장에서 실질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에 집중할 계획

○ 첫째, 정부 내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심사가 잘 되지 않았던 훈령, 고시 등에 근거를 둔 **각종 미등록 규제**들을 집중 발굴하여, **일괄 정비**하고

○ 둘째, 정부 업무를 위임·위탁 받은 **공공기관이 정관, 약관 등 내부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입찰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**를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지총괄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431), 규제개혁TF 송영상 사무관(☎ 044-203-53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산업부『제6차 규제 청문회』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**주요 덩어리 규제**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 검토 및 집중적인 논의로 개선방안 도출

○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

□ 회의 개요(안)

○ 일시·장소 : **'14.6.15(일) 14:00~16:00, 코트라(IKP동) 세미나실(1층)**

○ 참석 : 청문위원, 규제 담당자, 민간전문가 등 30여명

【청문위원】
(공공) 김재홍 제1차관(주재), 박청원 기획실장
(민간) **김문겸** 중소기업옴브즈만, **이종영** 중앙대 교수,
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, **김인중** 강원발전연구원 본부장

○ 안건 : **산업입지분야**(산업단지·공장설립 등) **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**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05	**(5분)**	**▪ 모두 말씀**	1차관
14:05~14:50	**(45분)**	**▪ [세션1] 산업단지 입주규제(업종/용도) 완화**	
14:05~14:15	(10분)	·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	입지총괄과장
14:15~14:50	(35분)	· 토론(참고인 : 민간전문가) 및 의결	
14:50~15:20	**(30분)**	**▪ [세션2] 행위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**	
14:50~14:55	(5분)	·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	입지총괄과장
14:55~15:20	(25분)	· 토론(참고인 : 민간전문가) 및 의결	
15:20~15:55	**(35분)**	**▪ [세션3] 추가 쟁점과제 및 규제신문고 건의사항**	
15:20~15:25	(5분)	· 과제 및 건의사항 발표	입지총괄과장
15:25~15:55	(30분)	· 토론	
15:55~16:00	**(5분)**	**▪ 마무리 말씀**	1차관

참고2 산업입지 분야 중점 규제개선과제 7개

□ 업종·용도제한 등 산업단지 진입규제 완화

① **(복합구역 도입)** 그동안 산업단지는 **산업시설**구역·**지원시설**구역·**공공시설**구역·녹지구역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**구역별 입주시설을 제한**

- 이는 근로자의 **복지·편의시설 이용 불편***을 초래하였고, 서로 다른 업종·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**융·복합공간의 조성도 제한**

* 작업장(산업시설구역)과 복지·편의시설(지원시설구역)간 이격에 따른 근로자 애로 발생 (예시: 반월시화단지 D社는 지원시설구역과의 거리가 5-6km)

☞ **산업·지원·공공시설의 통합 입주**가 가능한 **'복합구역'을 도입**, **제조**시설(작업장)과 **편의**시설(판매시설), **문화·레저**공간, **교육·연구**공간, **복지**시설(어린이집 등), **공공기관** 등의 혼합배치를 허용

② **(고부가서비스 입주 확대)** 산단 내 업종규제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, 지식산업은 13종에 한해 입주가 허용

☞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**지식산업을 20종***으로 확대하고, **입주대상 업종을 주기적**(3년마다 최소 1회)**으로 재검토**하여, 제조업과의 연계효과가 높은 고부가 서비스업의 입주를 촉진

*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, 환경정화 및 복원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물품감정·계량 및 견본추출업 등 7종 추가

③ **(지식산업센터 내 문화·집회시설 허용)** 現 법령상 **산단 내 지식산업센터**에는 영화관·음악당 등의 **문화·집회시설 입주가 제한**

* 문화·집회시설은 산단 바깥의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고 있음

☞ **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도 입주를 허용**, 근로자의 정주 여건 및 문화생활 환경을 개선

④ **(지가환수제도 합리화)** 산단 **용도별 구역 변경**으로 지가가 상승할 경우,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**지가상승분을 산단에 납부하여야** 하나,

- **"산단 내 현물"로만 납부가 가능**하기 때문에 다른 납부방식(예: 산단 바깥의 토지)을 희망하는 기업은 애로를 겪을 수 있으며,

- 용도변경시 **산입법**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)***상**으로도 **공공시설 설치의무**가 발생할 수 있어, **기업의 부담이 과도**해질 가능성

☞ **"산단 내 현물" 외의 방식**으로도 납부를 **허용**하고, 산집법상 지가환수의무와 산입법상의 상기 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**국토부와 협업하에 기업의 총 부담 규모를 합리적으로** 조정

□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위제한 완화

⑤ **(기준건축면적률 완화)** 입주기업은 사업 관련 건물(공장,사업장 등) **연면적**(각층 바닥면적 합계)을 **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**으로 건축해야 하나,

- 제조업은 업종별로 상기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(3~20% 사이), **비제조업**은 **전 업종이 40%로 통일**되어 **업종별 특수성을 미반영**

☞ **제조업과 유사**한 업종, 건물보다 **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업종**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을 **40%에서 완화**

□ 수요친화적 산업입지 행정 구현

⑥ **(임차기업 이전절차 간소화)** 산단 내 임차기업이 위치를 이전할 경우, 이전시마다 입주계약 체결 등의 신규입주절차를 거쳐야 함

* "입주계약 해지(기존사업장) ⇒ 입주계약 체결(신규사업장) ⇒ 공장등록"의 절차

☞ 임차기업이 **동일 산단 내**에서 시설변경 없이 **단순 주소지만 이전할 경우**, 신규 입주계약 체결 대신 **기존계약의 변경**만으로도 가능토록 함

⑦ **(공장설립 제출서류 간소화)** 공장 설립과 관련된 다수의 법령 및 인·허가를 감안, 산집법은 **인·허가 의제제도***를 두고 있으나, **실무에서는 여전히 서류의 중복제출**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

* 서류의 일괄 제출로 다양한 인·허가를 신속히 처리 가능토록 함

☞ **공장설립 승인 관련 민원서식을 개정**, 서류 중복제출의 관행 개선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